
**2017년 농업분야 보조금 사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

- 2017년 농업분야 보조금 사후관리 실태 - 특 정 감 사 결 과 공 개

1 | 감사실시 개요

1] 추진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21조
- 「중평준 자체감사 규칙」

2] 감사개요

- 기 간 : 2017. 4. 19.(수) ~ 4. 21.(금)(3일간)
- 감사대상 : 농정과·농업기술센터
- 감 사 반 : 기획감사실장 외 4명
- 감사범위 : 2015. ~ 2017. 3. 추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자체사업)
- 감사 중점사항
 - 보조사업의 재산관리 및 사후관리 적정성
 - 보조사업 취득 재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 보조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회수조치 적정성
 - 보조사업 사후관리 지도·감독 적정성 여부 등

2 | 감사결과

부서명	행 정 상 조 치(건)				재정상조치 (건/천원)	신 분 상 조 치(명)		
	소계	시정	주의	현지시정		계	징계	훈계
농업분야 보조금 사후관리실태	5	1	4	-	(1/자체산정)	-	-	3

3

처분지시 목록

번호	제 목	감사결과 처분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5건	주의 4 시정 1	환수 1	3명	
1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주의			
2	감사자료 제출 요구 소홀	주의			
3	♣♣♣♣♣♣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소홀	주의	환수 (자체산정)		
4	♠♠ ♠♠♠♠♠♠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부적정	주의			
5	지방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및 정산 부적정	시정			

처분지시서(1)

【제 목】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평균 보조금 관리 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 현 황

연도	사 업 명	보조금(천원)	사업량	비고
2015	☺☺☺☺☺☺ ☺☺☺☺☺☺ ☺☺☺ 외 5건 ¹⁾	189,900	14명	
2016	★★★★★★ ★★ ★★★★★	39,900	2명	

【위법부당내용】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및 증평균 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69조에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장이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지침 등에 정한 기간 중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에 ☆☆☆☆☆에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위 시범사업의 중요재산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관리카드’ (별첨)를 작성,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면서, 연2

1) 제출한 감사자료 중 시설하우스토양개량 시범사업, 찰옥수수 재배단지 시범사업, 작부체계 개선사업 제외 6개 사업임

회 운영실태 확인을 하고 있으나 확인일자, 확인자 서명만 기록되어 있고 점검계획, 점검내용, 확인관련 사진, 출장결과보고 등 관리여부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미비하다.

- 또한 2015년 ☆☆☆☆☆ 자체종합감사시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로 확인서 징구, 보조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의 관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및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별표8 : 제69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 농림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후관리기간은 농업경영체 등이 보조사업자가 되는 자율사업에 적용하며 공공사업은 사업별 여건에 맞게 설정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
- 행정상 처분 : 주의

- 민간자본보조사업 완료 후 중요재산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고, 이를 증빙 할 수 있는 출장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훈계 2명**

처분지시서(3)

【제 목】 ◇◇◇◇ ◇◇◇◇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산업시행지침서」

○ [표 1] 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원 보조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량	보조결정액			미정산 부가가치세
	주소	성명		계	보조	자담	
계							2,002.93
2015 ♣♣♣♣♣♣ ♣♣♣♣♣♣	도안면 ◆◆◆◆◆	☯☯☯	☆☆☆ 1개소	10,000	7,000	3,000	203.19
2015 ♠♠♠♠♠♠♠♠ ♠♠♠♠♠♠♠♠	도안면 ♣♣♣♣♣♣♣♣	▲▲▲	★★★ 6종	25,000.06	17,500	7,500.06	514.3
2015 ♥♥♥♥♥♥♥♥♥♥ ♥♥♥♥♥♥♥♥♥♥ ♥♥♥	증평읍 ♣♣♣♣♣♣♣♣	□□□	☺☺☺ 9종	30,006.84	21,000	9,006.84	1,285.44

【위법부당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의 규정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가 명시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5(중전의 제53조의3) 및 「농림축산식품산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표 2] 부가가치세 정산방법

구 분	국고/지방비 반납	정산할 금액	비 고
1.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 공제	당초 총사업비 -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금액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방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2.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하여 총사업비에 추가한 경우	없음	당초 총사업비 + 부가가치세를 활용한 사업계획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투자 및 정산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3. 사업계획변경 등 승인없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재투자된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 사후 반납	-	사전 승인없이 재투자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그러나, ☆☆☆☆☆표 1]의 2015년 ☞☞☞☞ ☞☞☞☞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표 2] 1.과 같이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 최종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납하도록 조치해야 하나,

-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2,002,930원 중 보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사업 정산 완료 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반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

○ 행정상 처분 : **주의**

-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하시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시정(회수, 자체산정)

- '15년 ㉸㉸㉸㉸ ㉸㉸㉸㉸ 보조사업자 3명에게 정산시 공제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2,930원 중 보조비율(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4)

【제 목】 ♥♥♥ ♥♥♥♥♥♥ ♥♥♥♥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산업시행지침서」
 「지방재정법」 및 「중평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표 1] 2015년 ◆◆◆◆◆ 지원 보조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사업량	보조결정액			사업비 정산액			부적정 사유	
주소	성명		구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증평읍 ☹☹☹☹	☆☆☆	○○○○○ 1대	당초	6,930	3,150	3,780	6,400	3,150	3,250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및 정산계획 미반영 (사업비에서 제외) - 형식변경승인 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미실시
			변경	6,300	3,150	3,150				
도안면 ☹☹☹☹	★★★	○○○○○ 1대	당초	7,150	3,250	3,900	7,150	3,250	3,900	
			변경	6,500	3,250	3,250				

【위법부당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에 따르면 저온저장고(바닥면적 17㎡ 이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5(중전의 제53조의3) 및 「농림축산식품산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

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표 2] 부가가치세 정산방법

구 분	국고/지방비 반납	정산할 금액	비 고
1.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 공제	당초 총사업비 -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금액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방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2.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하여 총사업비에 추가한 경우	없음	당초 총사업비 + 부가가치세를 활용한 사업계획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투자 및 정산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3. 사업계획변경 등 승인없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재투자된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 사후 반납	-	사전 승인없이 재투자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그러나, ★★★에서는 [표 1]의 2015년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2] 2.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재투자 및 정산계획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 하였어야 하나,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서와 2015. 4. 17. 당초 보조금교부결정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자부담으로 추가되었을 뿐 이에 대한 재투자 및 정산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 2015. 4. 20. 보조금변경 교부결정 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1,280천원)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였다.

○ 또한 「증평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형식변경 승인 시 사업비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을 실시하지 않아 이후 정산검사 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이와 같이 ★★★에서는 2015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에 대해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

○ 행정상 처분 : 주의

-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하시고,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경우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투자 및 정산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보조금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그러나 ★★★에서 추진한 2016년도 ○○○○ 증축지원 보조사업은 기존 1층 ○○○○○을 2층으로 증축함으로써 그 효용가치가 증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미등기 상태로 방치하는 등 사업담당자로서 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사업 관리책임 소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VI.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1]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그러나 ★★★에서는 2016년도 ♥♥♥♥♥ 증축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조건 외 추가 사업물량이 발생하여 공사 계약금액을 변경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핸드레일, 썬크대, 신발장, 폴리카보네이트, 점자블럭 설치 총 5건이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주 출입구 앞 점자블럭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사업담당자로서 정산 및 사업 관리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
- 행정상 처분 : **시정**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다목적회관 2층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부기등기 조치 및 미설치된 점자블럭을 설치완료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및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